

2022 세법학 스터디가이드 9판2쇄 정오표

페이지	위치	수정전	수정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2	하7	② ~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	② ~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7	상11	Ⅲ. 1. 2. 3. 변경	<p><1> Ⅲ.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개정</p> <p>1. 개요</p> <p>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국내에 1주택(일시적 2주택 포함)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</p> <p>2. 상생임대주택 요건</p> <p>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(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)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%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(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. 이 경우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.</p> <p>② ①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</p> <p>3. 1세대 1주택 특례</p> <p>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74	하2	② ~ 세율×10%	② ~ 세율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%를 반영한 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57	하8	중간예납세액은 ~. 다만, 해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~	중간예납세액은 ~. 다만, 해당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54	하11	① ~ 경우 (추가)	① ~ 경우. 다만, 해지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2	상9	포함한다.(추가)	포함한다. 다만, 2022.7.1. ~ 2023.12.31.까지 공급하는 것은 판매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.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31	하7	(3) 한도율 표 변경	<p><2> (3) 한도율 개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구 분</th> <th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과세표준</th> <th colspan="4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한도율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음식점업</th> <th col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이의 업종</th> </tr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023년까지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024년부터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023년까지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024년부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개인사업자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1억원 이하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75%</td> <td row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5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65%</td> <td row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5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억원 이하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7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6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억원 초과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6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4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55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4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법인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5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3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50%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만,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	구 분	과세표준	한도율				음식점업		이의 업종		2023년까지	2024년부터	2023년까지	2024년부터	개인사업자	1억원 이하	75%	50%	65%	50%	2억원 이하	70%	60%	2억원 초과	60%	40%	55%	40%	법인		50%	30%	50%	30%
구 분	과세표준	한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음식점업				이의 업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023년까지	2024년부터	2023년까지	2024년부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사업자	1억원 이하	75%	50%	65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하	70%	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	60%	40%	55%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인		50%	30%	50%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32	하10	2) 한도율 표 변경	<p><3> 2) 한도율 개정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1억원 과세표준 합계액</th> <th colspan="2">한도율</th> </tr> <tr> <th>2023년까지</th> <th>2024년부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개인사업자</td> <td>4억원 이하인 경우</td> <td>65%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4억원 초과인 경우</td> <td>55%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법인</td> <td>50%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만, 2022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	구 분	1억원 과세표준 합계액	한도율		2023년까지	2024년부터	개인사업자	4억원 이하인 경우	65%	50%	4억원 초과인 경우	55%	40%	법인		50%	30%
			구 분			1억원 과세표준 합계액	한도율													
2023년까지	2024년부터																			
개인사업자	4억원 이하인 경우	65%	50%																	
	4억원 초과인 경우	55%	40%																	
법인		50%	30%																	
465	◆1	탄력세율 : kg당 275원	탄력세율 : kg당 176.4원 개정 (2022.12.31.까지에 한함)																	
	◆2	탄력세율 : 8.4원	① 열병합용 천연가스 : 8.4원 ② ① 외 발전용 물품 : 10.2원 개정 (2022.12.31.까지에 한함) ③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: 8.4원																	
	◆4	탄력세율 : 순발열량 기준 kg당 5,500kcal 이상 49원 kg당 5,000kcal 미만 43원	탄력세율 : 순발열량 기준 ① kg당 5,500kcal 이상 41.6원 ② kg당 5,000kcal 이상 kg당 5,500kcal 미만 39.1원 ③ kg당 5,000kcal 미만 36.5원																	
466	◆4	(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)	(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) 개정																	
	하6	3) ~ 부탄 : kg당 275원	3) ~ 부탄 : kg당 176.4원 개정 (2022.12.31.까지에 한함)																	
	하3	③ 추가	③ ① 외 발전용 물품 : 2022.12.31.까지 kg당 10.2원 개정																	
	하2	추가	<4> 추가 5) 유연탄 : 2022.12.31.까지에 한하여 적용 ① 순발열량이 kg당 5,500kcal 이상(고열량탄)인 경우는 kg당 41.6원 ② 순발열량이 kg당 5,000 kcal 이상 5,500 kcal 미만인 물품 : 2022.12.31.까지 kg당 39.1원 개정 ③ 순발열량이 kg당 5,000kcal 미만(저열량탄)인 경우는 kg당 36.5원																	
527	◆3	이는~ 새로운 신탁자에게~	이는~ 새로운 위탁자에게~																	
557	상15	(2) ~ 60%(~)	(2) ~ 60%(~). 다만, 2022년도 1세대 1주택 : 시가표준액 × 45% (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)																	
587~589, 593		(용어변경) 창업자 → 창업기업																		
603	상17	~으로부터 자산(취득한 특허권~)	~으로부터 취득한 자산(취득한 특허권~)																	
632	◆3	내용에 박스표 변경	<p><5> 추가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$\text{과세이연금액} = \text{매각대상기업 주식 등 양도 시 양도차익}$ $\times \frac{\text{양도한 주식}}{\text{재투자로 취득한 주식}}$ </td> </tr> </table>	$\text{과세이연금액} = \text{매각대상기업 주식 등 양도 시 양도차익}$ $\times \frac{\text{양도한 주식}}{\text{재투자로 취득한 주식}}$																
$\text{과세이연금액} = \text{매각대상기업 주식 등 양도 시 양도차익}$ $\times \frac{\text{양도한 주식}}{\text{재투자로 취득한 주식}}$																				